

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(안) 심사보고 (의안번호 제21호, 2004. 6. 28)

총 무 위 원 회
2004. 6. 29.

1. 심사 경과

- 가. 2004. 6. 18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6. 19 :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4. 6. 28 :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(정보담당관 정대성)

가. 제정 이유

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- 1). 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· 세부계획수립 및 표준화시책 시행근거 마련(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)
- 2). 지하시설물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(안 제8조 내지 안 제14조)
- 3). 지하시설물 구축· 관리 및 활용규정(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)
- 4).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정 (안 제19조 및 안제 20조)
- 5).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규정(안 제21조)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
- 2003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공동구축시범사업(별용동 일원) 완료로 구축된 데이터의 유지관리와 본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, 현재 구축 중

인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, 관리 및 관련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,

- 민원 및 유관업체로부터 지리정보 신청이 있어도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어 정보제공이 불가능 한 바 구축된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이 필요함
-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인 지적법,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위배된 내용은 없으며, 사전 입법예고(2004. 5. 25 ~ 6. 14)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고,
- 조례안의 구조 및 체계, 자구 및 용어 등 전반적인 구성이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위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이문상 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, 향후에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부분임. ○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도 중요한 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, 담당자 교체시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기 바람. 	정보담당관 정대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도 강화하고,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겠음.

5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6. 소수 의견 : 없음